

# 대학원 의학레이저협동과정 운영 내규

개정 : 2025. 12. 15(내규 명칭 변경, 일부 내용 개정 및 조문 신설)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의학레이저협동과정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.

**제2조(적용범위와 효력)**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의학레이저협동과정 석 · 박사과정에 적용되며,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.

## 제2장 입학관리

**제3조(우수학생의 유치)** 의학레이저협동과정 소속 교수들은 의학레이저협동과정 석 · 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.

## 제3장 논문지도

### 제4조(지도교수의 선정)

- ① 학생의 세부 전공에 따라 논문지도 교수를 신청하고 논문지도 교수의 승인을 받아 최종 주임교수가 승인한다.
- ② 논문지도 교수 변경 시는 적합한 사유에 따라 변경 전후 지도교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최종 주임교수가 승인한다.

## 제4장 자격시험

### 제5조(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)

- ① 면제 기준은 석사과정, 박사과정, 석박사 공통 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한다.
- ② 면제 기준조건 및 과목 수 등은 [별첨1]과 같이 진행된다.

#### 제6조(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)

- ① 석사학위 과정의 종합학력시험 과목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이상으로 한다.
- ② 박사학위 과정 및 통합 과정의 종합학력시험 과목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 이상으로 한다.
- ③ 편입학생의 경우 전적 대학원에서 전공과 유사하거나 동일하고 종합학력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만 종합학력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④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할 수 없다.  
단, 특별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⑤ 시험 방법은 필기시험으로 시행하며, 합격 기준은 각 교과목당 80점 이상으로 한다.
- ⑥ 각 교과목당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.

#### 제7조(외국어시험 과목)

- ① 내국인 학생은 영어, 외국인 학생은 영어와 한국어 중 1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.
- ② 외국인 학생의 영어 선택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 학생만 가능하다.

### 제5장 학위과정

#### 제8조(학위과정) 본 학과는 석사과정, 박사과정 및 석·박사 통합 과정을 운영한다.

#### 제9조(졸업) 석사과정, 박사과정 및 석·박사 통합 과정을 포함한 모든 학위과정은 대학원 학칙 및 그 시행세칙에서 정한 학위 취득 요건을 충족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.

#### 제10조(석사학위 과정 선택)

- ① 본 학과의 석사 학위과정은 학위논문 또는 연구논문에 의한 학위 취득 방식을 선택 할 수 있다.
- ② 학위 취득 방식의 선택 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그 시행세칙에 따른다.

#### 제11조(학위과정 취득 자격요건) 각 학위과정의 취득 자격요건은 대학원 학칙 및 그 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.

**제12조(학위논문의 심사)** 학위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그 시행세칙에 따른다.

**제13조(논문심사위원)** 논문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그 시행세칙에 따른다.

**제14조(석사학위 과정의 변경)**

석사학위 취득 방식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.

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.

## 제6장 학과 운영위원회

**제15조(의사결정 방식)**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 교수 1/2 이상의 참석(위원장 포함)과 참석 교수 2/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부칙(2026. 3. 1.)

**제1조(시행)** 이 내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첨 1]

응시 과목 수	시험 면제 조건	면제 과목 수	저작 역할	게재 인정 일자
석사 : 2 , 박사 : 4	SCI급 학술지 논문 게재	2과목	공동 저자까지 인정	본 학과 입학 이후 취득한 실적부터 학위수여일 이후 1년 이내 취득한 실적까지 인정
	학술진흥재단 등 학술지 논문 게재	1과목		
	학술 발표	국제 1건당 1과목 국내 2건당 1과목		
	학과에서 인정하는 업적이 있는 경우, 심의를 거쳐 면제 여부 결정	석사 : 2과목 박사 : 4과목		